

排出 賦課金 制度 (Ⅱ)

鄭 國 鉉
(環境庁 振興協力課長)

4. 賦課金 算定方法 및 基準

前회에 계속하여 賦課金 算定方法에 關해서 說明코자 한다.

排出許容基準超過 汚染物質排出量은 排出許容基準超過 1日汚染物質排出量×排出期間으로 算

定한다. 1日汚染物質排出量은 改善命令 또는 移轉命令의 原因이 된 汚染物質의 排出許容基準超過濃度와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廢水 또는 배출가스의 流量에 의하여 계산한 그날의 廢水 또는 배출가스의 총량에 의하여 算定한 量을 kg 單位로 表示한 것을 말한다.

○ 排出許容基準超過 1日汚染物質排出量 算定方法

汚 染 物 質 等	算 定 方 法
亞 黃 酸 加 스	1日流量×排出許容基準超過濃度×10 ⁻⁶ × $\frac{64}{22.4}$
弗 素 化 合 物	1日流量×排出許容基準超過濃度×10 ⁻⁶ × $\frac{\text{化合物의 分子量}}{22.4}$
粉塵 및 水質分野 汚染物質等	1日流量×排出許容基準超過濃度×10 ⁻⁶

(註) 1) 排出許容基準超過濃度=排出濃度-排出許容基準濃度

2) 特定有害物質의 排出許容基準超過

1日汚染物質 排出量은 소숫점 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기타 汚染物質에 대해서는 소숫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점을 잘못 이해하여 부과금을 過多하게 算定하거나 賦課對象이 아닌 排出業所에 賦課한 事實이 發生되어 還給한 事例까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算定方法에 의하여 計算한 水銀(特定有害物質)의 1日汚染物質排出量이 0.0119 kg일 경우 特定有害物質은 소숫점 세째자리까지만 計算하기 때문에 0.011 kg으로 算定하여야 하며 만약 0.0009 kg일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特定有害物質을 除外한 기타 汚染物質에 對해서는 소숫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B.O.D) 또는 부유물질의 1日汚染物質排出量이 1 kg 未滿일 때에는 賦課金を 賦課할 수 없다. 일부 市·道에서는 擔當公務員의 認識 不足으로 1日 特定有害物質排出量이 소숫점 세째자리 이하로 배출하는 業所(例: 0.00047 kg)에 대해서도 賦課하거나 기타 汚染物質의 1日 排出量이 소숫점 이하로 排出하는 業所(例: 0.9 kg 또는 0.12 kg)에도 極히 적은 金額을 잘못 賦課한 事例가 있었다.

1日 流量의 算定方法은 측량유량×1日 作業시간으로 計算하며 1日 作業시간은 測定하기 前最近 作業한 30日間의 作業시간의 平均値로서 廢水의 경우에는 分으로 表示하고,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時間으로 表示한다.

이때 廢水의 측량유량의 單位는 分當 리터(ℓ/min)이고,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시간당 제곱미터(m³/h)이다.

賦課金を 算定하는데 있어서 排出許容基準 超過率別 賦課係數, 地域別 賦課係數, 惡臭濃度別 賦課係數, 年度別 賦課金 算定指數도 主要 要因이 된다.

排出許容基準超過率 賦課係數는 超過率에 따라 賦課係數를 높게하고 있다. 즉 超過率이 20% 미만일 때에는 1이나, 20% 이상, 40% 미만시에는 1.3~1.6이며, 40% 이상 80% 미만시에는 1.6~1.7, 80% 이상 100% 미만시에는 1.8~1.9, 100% 이상 200% 미만시에는 1.9~2.5, 200% 이상 300% 미만시에는 2.0~3.5, 300% 이상 400% 미만시에는 4.5로서 汚染物質의 배출농도가 높을수록 높게 査定되어 있다.

환경보전에 관한 문예작품 및 학술논문현상공모

전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드높이고 환경보전 운동에 우리모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문예작품 및 학술논문을 다음과 같이 널리 현상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공 모 대 상	공 모 종 목	공 모 주 제	제 목	분 량	시 상	
					입선구분	내 역
초·중 고생	수 필 (동화 동시 포함)	○ 환경보전의 중요성 ○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등 기타주제	자유	200 자 원고 지 20 매 이 내 (한글 전 용)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3편 가작 39편	상장 및 부상 " " "
대학생 및 일반 인	논설문	○ 환경보전과 개발의 관계 ○ 환경과 인간의 상 호작용등 기타주제	자유	200 자 원고 지 70 매 이 내 (국·한 문혼용)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3편 가작 5편	상장 및 상금 " " "

● 제출요령

- 초·중·고생 : 각 시·도 교육위원회경유
- 대학생 및 일반인 : 작품제출처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응모마감 : 1984년 5월 10일

● 제 출 처 : 환경청 종합계획과 (전화 779-2027)

(서울시중구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 시상일자 : 1984년 6월 5일 (제 12회 세계환경의날)

※ 작품제출시 표지에 제출자 주소·성명·소속학교 학년·반 등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제출처에 문의바랍니다.

1984년 3월 일

환 경 청 장